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71호
----------	------

2021. 05. 25.

건명	논산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5. 17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체육진흥협회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제명 개정 ‘논산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·운영에 관한조례’를 ‘논산시 체육진흥협회의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개정
- 협의회 구성(안 제3조)

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